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00 발의연월일: 2021. 4. 20.

발 의 자 : 윤준병 • 어기구 • 김민철

오영환 · 김성환 · 홍익표

기동민 · 임종성 · 민병덕

강득구 · 양정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장에서"를 "공장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영업 구역을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 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 ----- 공장 등에서 ----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거 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 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영업 구역 을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 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략) 항까지와 같음)